

[일련번호 : 8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체결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및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)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동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59조(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) 제1항에는 상기 법 제73조 제1항에 명시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”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와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임을 규정하고 있고,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과는 2024년 ‘*** ** 리모델링 건축·기계공사’(계약금액 146,137,120 원)를 시행하면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착공일 전일까지 체결하여야 함에도 착공일 이후 계약의뢰를 하는 등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.

[표]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체결 소홀 내역

계약일	공사명	착공일	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체결일	비고
2024.12.10.	*** ** 리모델링 건축·기계공사	2024.12.10.	내부결재 : 2024.12.12. 계약대장 : 2024.12.09.	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